####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756 제출연월일: 2024. 8. 12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・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

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, 분사무소를 이전한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

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75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0조[분사무소(分事務所) 설치의 등기]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(主事務所)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- 제51조(사무소 이전의 등기)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  -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제52조의2 중 "주사무소와 분사무소"를 "주사무소"로 한다.

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85조(해산등기)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 기하여야 한다.
  - 1.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
  - 2.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

- 3.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
-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ㅎ

개 정 안

第50條(分事務所設置의 登記) ① 法人이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主事務所所在地에서는 3 週間內에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고 그 分事務所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前條第 2項의 事項을 登記하고 다른 分事務所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그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여야 한다.

②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 分事務所를 設置 한 때에는 前項의 期間內에 그 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 면 된다.

第51條(事務所移轉의 登記) ①法 人이 그 事務所를 移轉하는 때 에는 舊所在地에서는 3週間內 에 移轉登記를 하고 新所在地 에서는 同期間內에 第49條第2 項에 揭記한 事項을 登記하여 야 한다.

②同一한 登記所의 管轄區域內

제50조[분사무소(分事務所) 설치 의 등기]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(主 事務所)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제51조(사무소 이전의 등기)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

에서 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그 移轉한 것을 登記하면 된다.

제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)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・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

第85條(解散登記) ①清算人은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後 3週間內에 解散의 事由 및年月日,清算人의 姓名 및 住所와 清算人의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을 主된 事務所 및 分事務所所在地에서登記하여야 한다.

②第52條의 規定은 前項의 登 記에 準用한다.

3주일	내에	새	소재	지와	이전
연월일	을 등	-기ㅎ	<del> </del> 여야	한다	- <u>-</u>

세52조의2(직무집행정지 등	가처
분의 등기)	
<u>주사무소</u>	

제85조(해산등기)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 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. 1.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

- 이 권사이이 서머리 즈자
- 2.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
- 3.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

   경우에는 그 제한
-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

   제52조를 준용한다.